

# 아시아 이유에스 코리아 (Asian EUS Korea) 회칙

제정: 2015년 4월 1일

개정: 2025년 6월 27일

개정: 2025년 9월 8일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명칭

본회는 '아시아 이유에스 코리아'로 칭하고 영문표기는 "Asian EUS Korea"로 한다

### 제2조 사무소

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(방이동, 동산빌딩 4층) ACROFFICE 송파센터 452호에 둔다.

## 제2장 목적 및 활동

### 제3조 목적

본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내시경초음파학자들의 학술단체로 교육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 활동

본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

- ① World Endoscopy Organization (WEO) 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 학술활동
- ② 내시경초음파 관련 학술대회 및 우수 교육센터에서의 교육 (Train the Trainers)
- ③ 각국에서 지역 내시경초음파 전문가들을 초빙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초보자들을 위한 워크샵 개최
- ④ 초급부터 고급 분야에 걸친 내시경초음파 교육전략개발 및 교육계획수립

## 제3장 회원

###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

아시아 이유에스 코리아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

- 1) 정회원: 정기적인 출석과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내시경초음파 관련 종사자.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행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모든 경우에 제약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2) 명예회원: 정회원은 아니지만 내시경초음파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한 개인으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해진다. 회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## 제6조 회원 가입

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다른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 입회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가입이 결정된다.

## 제7조 회원의 의무

- 1) 회비납부: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사무국에서 미납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표권 및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2) 연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한다.
- 3) 회원양도: 회원의 양도는 불가능하다.

## 제8조 회원의 권리

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. 명예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며 발언권만 갖는다.

## 제9조 자격의 상실

별다른 사유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## 제10조 탈퇴

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탈퇴를 원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통지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 단 탈퇴시 기납부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
# 제4장 임원

## 제11조 임원의 구성

임원은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재무이사 1인, 학술이사 1인, 교육이사 1인, 연구이사 1인, 섭외/홍보이사 1인, 편집이사 1인,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.

##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

- 1) 모든 임원은 2년마다 선출되고 선출일로부터 2년간 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
- 2)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3) 전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4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.
- 5)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.
- 6) 임원후보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천되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된다.
- 7) 회장은 이사회와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선출한다. 여기서 과반수는 백지투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전체 유효투표자의 1/2 이상을 의미한다. 첫번째와 다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득표

를 받은 후보를 제외하고 마지막 한 명이 과반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한다. 동수의 득표의 경우에도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한다.

8) 각 이사는 회장이 유자격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### 제13조 임원의 의무

각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회장: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회 주관의 모든 행사를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, 주재한다.
- 총무이사는 이 회의 운영과 기획을 담당한다.
-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,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를 상설하여 학술대회 및 모든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한다.
- 교육이사는 회원의 초기 및 재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연구이사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섭외/홍보이사는 학회 및 학회행사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의 추진 및 조정을 담당한다.
- 편집이사: 단체 학술지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의 기획, 편집 및 정기 간행을 담당한다.
- 감사: 본 회의 운영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.

## 제5장 회의

### 제14조 총회

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다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. EUS summit 기간 중에 1회 총회를 개최한다.

- 1) 정관의 개정
- 2) 연간 예산 및 재무제표 보고 및 연간 활동 승인
- 3) 임원 선임 및 해임
- 4)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
- 5) 이사회에서 제기하는 안건
- 6) 기타 회장이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

### 제15조 이사회

이사회는 제11조에 명시한 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.

- 1) 총회의 안건 결정
- 2) 명예회원의 추대
- 3) 일반회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에 관한 결의
- 4) 기타 각 임원이 제기한 중요 사항

### 제16조 위원회

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1) 자문위원회: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언을 할 책임이 있다.

2) 운영위원회: 국내 내시경초음파 전문가 중에 활동적인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, 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한다.

- ① 본 회의 목적과 교육목표를 포함한 활동
- ② 교육계획 및 내용 기획, 검토
- ③ 대외적인 국제기관과의 협력

3) 분과위원회: 이사회에서 필요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은 이사회회의승인 하에 회장이 결정한다.

- (1) 조직위원회
- (2) 학술위원회
- (3) 편집위원회
- (4) 홍보위원회
- (5) 섭외위원회

#### **제17조 위원회 결의 및 실효성**

위원회의 안건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 제13조의 안건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되지 아니하면 부결된다.

### **제6장 재무 및 회계**

#### **제18조 재정**

본 회의의 재정은 연회비, 찬조금, 등록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연회비와 등록비 등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**제19조 감사**

본 회의의 수지결산은 감사 1인의 감사를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20조 회계연도**

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**제7장 회칙의 개정 및 부칙**

#### **제21조 회칙의 개정**

- 1) 회칙의 개정: 본 회칙은 정회원의 2/3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변경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.
- 2) 본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5.6.27일과 2025.9.8일 개정되었다.

**제22조 부칙**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.